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5.7.2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4조)

나. 공유재산 심의 생략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용도폐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

-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40일전까지

라.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 제한(안 제17조)

- 총 무상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음

마.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안 제20조의2)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제기구 또는 단체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안 제22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안 제24조의2)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으로 이주하는 제조업체

아. 대부료 요율(안 제28조)

- 「초지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안 제32조)

- 지역 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100분의 30감면
-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100분의 30 감면

차.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증가

카. 대부료의 납부 중 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삭제(안 제35조)
-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초과일 경우 분할 납부

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40조)
- 공유지 위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5년도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각
- 영 제38조제1항31호에 따라 제5호를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안제4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구체적인 규정을 권고 받았으나 상위법상 성별규정이 있어 미반영.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입법예고 : 2015. 9. 24. ~ 10. 14.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신설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사항을 민간인 과반수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생략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변경하여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 총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코자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와 제24조의2에서는 지역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제22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수의로 계약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30일 이내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28조는 『초지법』제17조제1항에서 공유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32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조항에서는 지역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전시·판매할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34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35조는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 5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4호는 공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토지 매각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제5호는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31호에 따라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가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에서 50%이상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에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우리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 사유

○ 최근 캠핑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가야산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가야산등산객 및 성주 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등산자원 거점지구로 특화시키고자 하며

○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성주군 상징 역사유적을 재현·정비하여 지역정체성 확보 및 도심 휴양공간 확충과 관광자원화를 실현코자 하며

○ 성주향교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성주향교의 정비와 복원 및 복합전통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평생교육·체험교육 등 전통문화교육기관의 역할을 회복하고 주변문화 유적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동기부여를 하며

○ 참외발효과 수매량 급증으로 액비처리를 위해 구·분뇨처리장을 활용하여 일시저장 하고 있으며, 액비 저장공간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참외 발효과 유통근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4. 주요 골자

□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사업부지 현황

- 위　　치 :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786번지 일원
- 규　　모 : 총33필지 26,259㎡(7,943평)
 · 기매입 : 17필지(11,009㎡), 금회매입예정 : 16필지(15,250㎡)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2년간)
- 사 업 비 : 3,869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2,869)
 · 토지매입예산액 : 1,869백만원
- 예산반영 : 2016년 본예산 편성

○ 추진현황
- 2012. 2. : 매각인가 신청 및 승인
- 2012. 3. : 구.청소년수련원 부지 및 건물매입
- 2013.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2014. 4. :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활용방안
- 캠핑 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체험관광 시설조성
- 가야산 등산객 증가에 대비한 등산지원 거점지구로 특화

○ 기대효과
- 국민여가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 관광관련 행정수요를 만족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 사업부지 현황
- 위　　치 : 성주읍 경산리·예산리·백전리 일원
- 부지면적 : 35,177㎡(10,641평)
 · 기매입 : 68필지(32,378㎡), 금회매입예정 : 8필지(2,799㎡)
- 사업내용
 · 성주사고 재현, 성주읍성 및 북문 재현, 사직단 조성
 · 역사기록문화관 건립, 각종 선정비 이전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년간)
- 사 업 비 : 76억 정도 (국비 38억, 도비 5억, 군비 33억)
 ※ 토지매입비 별도 : 7.6억 정도
- 예산반영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총 계	7,600		1,000	2,000	2,600	2,000
지 특	3,800		500	900	1,400	1,000
도 비	500			500		
시군비	3,300		500	600	1,200	1,000
기 타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5. 1월 : 토지보상완료,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 2015. 4월 : 문화재 정밀 시굴조사 시행
- 2015. 7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15. 9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 2016년 :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
- 2017 ~ 2019년 : 역사유적 재현 및 정비, 시설공사

○ 활용방안
- 성주군의상징인성주사고, 성주읍성, 역사유적으로 재현·정비하여 성주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 도시전체의 부족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사문화형 관광자원으로 개발

○ 기대효과
- 성주군 상징 역사유적의 재현·정비를 통한 성주 정체성 확보 및 도심 휴양공간 확충과 관광자원화 실현

□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 사업부지 현황
- 위 치 : 성주읍 예산리 132-1번지 일원(성주향교 주변)
- 규 모 : 총4필지 4,242㎡(≒1,284평), 건물2동 191㎡
- 사 업 비 : 3,800백만원 정도 (국비 2,600 지방비 1,200)
 토지매입예산액 :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5년간)
- 예산반영 : 2016년 본예산 편성

○ 주요사업
- 1단계(향교복원) : 동·서재 및 만화루 복원, 고직사·입덕문 중창
- 2단계(주변정비) : 주차장, 진입광장, 테마공원, 주변조경 등

○ 추진계획
- 2016년 :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행정절차 이행
- 2017년 : 실시설계, 지표 및 발굴조사, 사업착공
- 2020년 : 사업완공

○ 활용방안
- 국가문화재 성주향교의 정비와 복원으로 평생교육·체험교육 등 전통교육 기관으로 활용

- 복합문화센터 등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발전

○ 기대효과
- 영남의 큰고을 성주목 성주향교 위상 회복 및 지역 정체성 확보
- 전통문화와 현대 인문정신의 융합 등 지역전통문화발전소 역할 기대

□ 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
○ 확충 부지 현황
-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4-1번지(1필지)
- 현 소유자 : 김순자(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61길 28)
- 부지면적 : 2,793㎡(≒845평)
- 매 입 비 : 253,909천 원정도 (300천 원/평)
- 예산반영 : 2016년 본예산 편성

○ 활용방안
- 액비 임시 저장고 추가 설치로 액비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 신부리 781-36번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인접 토지 활용 가능

○ 기대효과
- 참외 발효과 유통근절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 폭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액비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 발생 예방

붙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부.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5,104	890,713				4	25,104	890,713	
		건물	43	1,143.75	4,805,728				3	1,143.75	4,805,728	
		기타										
	1.매입	토지		25,104	890,713				4	25,104	890,713	
		건물	43	1,143.75	4,805,728				3	1,143.75	4,805,728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과표가액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묘지	가천면 신계리 786	235	2,867	20,069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2	답	가천면 신계리 728-2	458	7,877	57,014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3	답	가천면 신계리 728	661	14,277	102,643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4	대	가천면 신계리 730	500	27,400	96,000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5	답	가천면 신계리 730-3	3,061	66,117	442,268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6	답	가천면 신계리 736	1,954	23,448	172,118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7	답	가천면 신계리 730-1	7	27	223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8	답	가천면 신계리 793	1,796	21,552	158,201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9	도로	가천면 신계리 7393-1	125	495	5,625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0	대	가천면 신계리 796	995	31,740	129,350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1	답	가천면 신계리 796-1	2,810	39,340	286,859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2	전	가천면 신계리 738	1,822	17,309	128,606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3	도로	가천면 신계리 1134-3	166	12,410	12,410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4	도로	가천면 신계리 1134-2	80	14,086	14,086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5	구거	가천면 신계리 1135	287	29,939	29,940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6	도로	가천면 신계리 1134	293	19,853	19,854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17	건물	가천면 신계리 796	201.6 (2동)	58,860	131,040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주택 및 창고
18	건물	가천면 신계리 730	96.5 (2동)	24,800	62,725	2016.01. ~ 12.	가야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편입	주택 및 창고

일련번호	재산표시			과표가액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9	전	성주읍 예산리 512	345	24,558	89,700	2016년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20	전	성주읍 예산리 512-4	132	15,219	34,320	〃	〃	
21	전	성주읍 예산리 511	325	14,690	87,750	〃	〃	
22	대	성주읍 예산리 511-1	236	35,612	82,600	〃	〃	
23	전	성주읍 예산리 511-2	373	16,859	126,820	〃	〃	
24	잡	성주읍 예산리 512-1	485	55,338	126,100	〃	〃	
25	도로	성주읍 예산리 789-8	320	12,175	58,240	〃	〃	
26	전	성주읍 경산리 105-1	583	82,436	157,410	〃	〃	
27	건물	성주읍 경산리 114-2번지 외	85	900,000	900,000	2017~2019	〃 (성주사고)	
28	건물	성주읍 경산리 233번지 외	570	3,800,000	3,800,000	〃	〃 (역사기록문화관)	
29	전	성주읍 예산리 132-1	1,422	47,210	86,031	2016년	성주향주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30	전	성주읍 예산리 154	1,577	52,356	94,198	〃	〃	
31	대	성주읍 예산리 133-1	632	49,928	114,600	〃	〃	
32	대	성주읍 예산리 213	631	48,902	114,526	〃	〃	
33	건물	성주읍 예산리 133-1	63.63	1,272	50,000	〃	〃	
34	건물	성주읍 예산리 213	127.02	20,796	100,000	〃	〃	
35	토지	선남면 신부리 4-1	2,793	106,693	253,909	2016년	참외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	**토지**	**취득 처분**	25,104	890,713	3,101,479			
	건물	**취득 처분**	1,143.75	4,805,728	5,043,765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금번에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성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및「참외 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편입부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근 캠핑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가야산 등산객 및 성주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계·용사권역 활성화와 등산지원 거점지구로 특화하여, 향후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구·적십자수련원 부지인 가천면 신계리 739번지 일원에 캠핑장 조성을 위한 주변의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2013년 3월에 구 적십자수련원 부지 17필지 11,009㎡(3,330평)와 건물 1,181㎡를 1차 매입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다양한 캠핑시설 설치 특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16필지 15,250㎡(4,613평) 및 건물 298㎡를 매입하는 것이며

-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7억 원을 포함한(토지매입비 제외) 총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예정이며 2013년 6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4월 군자체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국민여가 수요 충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성주군 상징 역사유적의 재현·정비를 통한 성주 정체성 확보 및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 개촉지구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성주읍 경산리·예산리·백전리 일원에 토지 68필지 32,378㎡(9,794평)를 매입하였으며, 성주읍성 및 북문재현, 역사기록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추가로 예산리 512번지외 7필지 2,799㎡(846평)을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 본 사업은 국비 38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33억 원으로 총 사업비 76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5월부터 7월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성주사고, 성주읍성 및 북문 재현, 역사기록문화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건은 성주군의 상징인 성주사고 성주읍성 역사유적으로 재현·정비하여 성주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필요한 사업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주향교는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보물 제1575호로 지정된 우리군 중요문화재로서 현재는 선현봉사로 향교 본연의 전통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평생교육과 체험교육이 권장되면서 성주향교의 정비·복원사업과 주변문화유적과 연계함으로써전통문화교육기관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향교내 전통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 본 건의 대상부지는 성주읍 예산리 132-1번지 일원으로 총4필지 4,242㎡(1,283평), 부지내 건물 2동 191㎡이며, 최근에 준공한 유림회관과 연계한 테마공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주변 조경 등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비는 총 38억 원 정도이며 국비 26억 원 지방비 12억 원으로 2016년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2017년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은 주변 부지매입을 통해 국가문화재 성주향교의 정비와 복원으로 평생교육, 체험교육 등 전통 교육기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주향교 주변정비 및 활성화사업 조성부지 총 4필지 4,242㎡ 중 예산리 132-1번지와 동소 154번지(면적 2,999㎡)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체험시설 부지로서 이용객의 편의성, 충분한 공간확보 여부, 소요예산의 효율성 등 향후 목적사업에 적합한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참외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재배되는 참외는 전국 참외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160,000톤 정도의 고품질 참외 유통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성주참외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2008년부터 참외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참외 자조금 인상(20원→40원)으로 참외 발효과 및 저급과 수매량이 급증하여, 금년에는 5,100여톤의 참외를 수매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4,000여톤의 액비로 맞춤형액비 및 퇴비제조에 약2,000여톤을 소비하였으나, 나머지 원물은 구·분뇨처리장 및 민간 액비저장고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참외발효과 액비의 저장공간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 편입부지는 선남면 신부리 4-1번지 1필지에 면적 2,793㎡(약846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액비저장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물의 안정적 저장이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참외발효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액비저장 공간의 확대 등 발효과 유통근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공공목적의 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투자로 인한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3,388천원

- 산정기준 : 전전년도(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단위: 천원)

'14년 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16년 연구원 출연금
	소계(ⓐ+ⓑ)	현년도ⓐ	과년도ⓑ	
22,585,577	22,585,577	22,183,275	402,302	3,388

※ 출연금 산정액 : 22,585,577천원 × 1.5/10,000 = 3,388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행정자치부 훈령」〈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1】「세출예산 사업별 분류」기준

나. 예산조치 : 2016년 당초예산 편성(3,388천원)

다.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출연 승인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출연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본예산 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이 2016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338만 8,000원이며, 금액의 산정기준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 225억 8,557만 7,000원의 1만분의 1.5로 계산 된 것입니다. 참고로 출연금과 관련된 지방세관련법에 의하면『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지방세 기본법』제14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출연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관계법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